##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(횡령)



[서울지방법원 2003. 11. 13. 2002고합707]

## 【전문】 【피 고 인】 【검 사】 김석우 【변호인】 법무법인 【주문】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피고인으로부터 금 1,175억 1,000만원을 추징한다. [이유] 1 [이유] 1 [이유] [이유] 1 [이유] ] 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